

참고1 비상임이사 후보 심사기준

□ 심사평가 항목

○ 비상임이사 평가

평가 항목	내 용
전문지식과 경험	· 학력 및 전공 · 해당분야 근무경력 및 실적 등
효율적 직무수행능력	· 경영 감독 · 지원을 위한 추진력 · 합리적, 독립적 의사결정 능력 · 임원간 상호관계유지 및 협력적 업무수행 능력
윤리의식과 책임감	· 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이행 의지 · 공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강한 책임감

■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(임원후보의 추천 제한)

- ① 위원회는 퇴직공무원을 임원후보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,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1. 공개모집 등 경쟁방식에 의하여 추천하는 경우
 2. 업무의 이관·위탁, 업무특성 등으로 인해 해당분야 퇴직공무원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선정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1. 공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
 2. 공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
 3. 공사와 법률자문·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·공인회계사·세무사 및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

■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의 1(이해관계 임원의 참여제한)

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 시기 임원 직위의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.

■ 해외건설촉진법 제28조의12(임직원 등의 결격사유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,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지원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.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(결격사유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2. 제22조제1항, 제31조제7항, 제35조제2항·제3항, 제36조제2항, 제48조제4항·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■ **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**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"비위면직자등"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
가. 「변호사법」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,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(유한),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

나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

다. 「세무사법」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

라.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

마. 삭제 <2022. 1. 4.>

바. 삭제 <2022. 1. 4.>

사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

아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

자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

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
■ **상법 제382조제3항 (결격사유)**

③ 사외이사(社外理事)는 해당 회사의 상무(常務)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.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.

1.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·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·감사·집행임원 및 피용자
2.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·비속
3.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·감사·집행임원 및 피용자
4. 이사·감사·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·비속
5.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·감사·집행임원 및 피용자
6.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·감사·집행임원 및 피용자
7. 회사의 이사·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·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·감사·집행임원 및 피용자